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0. 21 선고 2020가합67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훈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진호(소송구조)

변론 종결2021. 6. 24.

판결 선고2021. 10. 2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254,192,0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4,192,0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의료법 등 위반행위 및 선행 민사소송 결과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부당이득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 B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사단법인 C 명의로 'D치과의원'(이하 '제1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2012. 6.경부터 2016. 7. 11.까지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532,622,9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E치과의원'을 개설하여 2009. 3.경부터 2010. 8.경까지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126,111,0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2010. 8. 19. E치과의원의 상호를 'F치과'(이하 E치과의원과 F치과를 통틀어 '제2 의료기관'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2012. 1. 27. 이를 폐업한 뒤 같은 날 'G치과'로 다시 개설하여 2010. 9.경부터 2016. 4.경까지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870,150,117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의 범죄사실로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329, 2016고합557(병합)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 B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노54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다른 의료기관(H요양병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 6. 15.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8. 12.경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7785호로 '제2 의료기관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2010. 8. 19.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17,704,410원(E치과 부분)과 2010. 10. 20.부터 2012. 2. 20.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39,762,970원(F치과 부분) 합계 257,467,380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9. 7. 29.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204호로 제1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528,972,300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2. 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재산 처분행위

1) B는 1992. 10.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7. 20.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와 피고는 2016. 12. 9.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처럼 B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사단법인 C 명의로 제1, 2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의사 등을 고용하여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786,439,680원(= 제2 의료기관 관련 257,467,380원 + 제1 의료기관 관련 528,972,300원)을 지급하라는 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액 중 상계처리금액 및 다른 연대납부자의 납부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786,397,3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하여 786,397,380원의 채권을 가지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미 무자력 상태에 빠진 B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1982. 12. 1. B와 혼인하면서 지참금으로 7,000만 원을 가지고 갔고, 위 지참금을 금으로 바꾸어 보관하다가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이 사건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명의만을 B에게 신탁한 피고의 고유 재산이고 B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B는 2016년경 피고와 이혼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피고가 B와 혼인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재산은 사실상 전적으로 피고의 노력과 기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적정한 재산분할이고,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B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209,513,170원을 대여하였고, 이혼 당시 B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인식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조합, J조합 대궂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K에 대한 감정축탁 결과, 증인 B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특유재산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이며, B는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특유재산인지 여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B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피고는 1982년경 B와 혼인하면서 7,000만 원을 지참금으로 가져온 후 이를 금으로 바꾸어 보관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보관하던 금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지참금 7,000만 원을 모두 금으로 바꾸어 10년간 보관하다가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매매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각 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증인 B의 일부 증언 또한 믿기 어렵다.

(2) 피고는 과거 모든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하던 우리 사회의 오래된 관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B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03. 12. 19. 김포시 L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L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L 부동산은 B가 목사로서 개척한 M교회의 건물 및 부지로 사용되었는바, 이러한 L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피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피고와 B는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L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동두천경찰서장은 2016. 3. 30. 원고에게 '2016. 4. 1. 제1, 2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니 지원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수사협조의뢰를 하였고, 경찰은 2016. 7. 15. B와 공범으로 기소된 N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2016. 7. 18. 원고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7. 1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1, 2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자신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기소될 예정이고,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보유한 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김포시 O 토지 및 P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의 가액 합계는 579,166,250원이었으며, 소극재산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249,746,732원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채무 786,397,380원을 부담하고 있어 - 456,977,863원(= 579,166,250원 - 249,746,732원 - 786,397,380원)의 채무초과상태였다. 그런데 B는 약 280,00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B의 채무초과 상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3)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B는 의료법 등 위반행위를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② B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 약 5개월이 지난 2016. 12. 9.에야 협의이혼신고를 한 점, ③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와 피고가 이혼을 마음먹고 재산분할에 관한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혼인기간 중 B 계좌로 상당한 돈을 송금하였으나, B 또한 피고가 송금한 돈 이상을 피고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와 B가 1982년부터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피고와 B는 경제공동체로서 수시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B 계좌로 송금한 돈 상당액을 B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B에게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여전히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고 인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되찾아 왔을 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가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의 가액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Q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이 49,746,732원인 사실, 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6. 7. 29.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 가액배상의 한도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

3) 이 법원의 K에 대한 감정축탁 결과에 의하면, 2020. 4. 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03,938,7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254,192,018원(= 303,938,750원 - 49,746,732원)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잔여 피보전채권액은 786,397,380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

4) 결국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254,192,0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상당액인 254,192,0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교식

판사정지원

판사홍순건

별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나목